

2020. 10. 22.(목)

<본사 중회의실(7층)>

-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8대 대의원 -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< 임시대의원회 안건개요 >

- 2020년도 단체교섭(임금협약) 안건 심의의 건



민주노총/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I. 제18대 대의원회 구성현황

① 활동근거

-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(대의원회) 제17,18조
- 대의원회 당선 공고('20. 3. 13. / 8. 20.)

② 대의원회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'20.03.12. ~ '21.01.31. ※제19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
- 활동범위 : 조합규약 제20조(대의원회의 기능)
 ※제15조 제2항(해산, 위원장·임원 선출 등)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
- 대의원구성

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	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
여성대의원 (1)	이 화 영		대전오월드 (4)	맹 재 영	
혁신기획실 (1)	전 동 혁			김 근 영	
경영지원처 (2)	홍 의 준		환경사업처 (8)	염 기 범	
	차 영 주			김 철 규	
고객지원처 (1)	백 민 호			이 정 현	
도시개발처 (2)	한 상 은			정 종 희	
	이 흥 인			채 양 기	
건설사업처 (2)	정 태 원			박 인 병	
	조 보 람			임 재 현	
대전오월드 (4)	김 용 선			염 상 빈	
	박 중 상				
합 계			총 21명		

※ 소속별 배정인원은 대의원회(2020.01.13.)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

Ⅱ. 임시대의원대회 안건

□ 2020년도 단체교섭(임금협상) 안건 심의의 건

[1] 단체교섭위원 구성 현황

[단체교섭 추진 관련 내부규정]

-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제10장(단체교섭 및 노사협의) 제48~51조

○ 단체교섭위원 구성

- 노측대표 : 노조위원장
- 위원구성 : 위원장을 포함한 3~7인

[당연직] 위원장

[위촉직] 위촉위원 (위원장 위촉▷대의원회 승인)

○ 위원의 임기 : 당해 단체교섭 체결시까지


○ 2020년도 단체교섭위원 추천명단

구 분	교섭위원 명단		비 고
	노측 교섭위원	사측 교섭위원	
대표 교섭위원	위원장 조 성 민	김 재 혁	-
교섭위원	부위원장 양 영 재	최 규 관	변경예정
	부위원장 장 수 련	장 시 득	-
	사무국장 백 승 권	김 동 원	-
	대의원 채 양 기	이 근 수	-
간 사	대의원 김 용 선	한 상 현	-

※ 노사협의위원회와 중복운영으로 사측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섭권 향상에 기여

[2] 단체교섭[임금협상] 안건

[2020년도 임금인상 요구]

- **임금인상률 : 4.2%** (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준용)  붙임문서 참조
 - ※ 2019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2.8% + 호봉승급분 1.4% 별도인상

※ 임금인상률 반영(정률인상, 정액인상 등)에 관한 사항은 별도협의 필요

- '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'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.8%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
- * 단, 2018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1.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.3% 이내, 46.4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.8% 이내, 41.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.3% 이내에서 증액 편성

< 총인건비 관련 전문 >

-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,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
 - 다만, 사장 및 정원 외 직원(비정규직) 인건비, 퇴직급여충당금, 평가급 및 성과급, 가족수당(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), 영유아보육비(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), 자녀학비보조수당(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), 4대 보험* 사업자 부담분,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,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(급식비, 교통비 등),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(2년)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, 「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」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(상생고용지원금),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**, 비정규직의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(기존 무기계약직 포함)에 대한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7.7.20)」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(급식비 월13만원, 복지포인트 연40만원, 명절상여금 연80만원)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최저임금 인상***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,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은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

* 4대보험: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(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), 국민연금

**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(초과)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. 단, 설,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.

***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

○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말 정원(무기계약직 포함)을 기준으로 편성하되,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*한다.

*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(101-03)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

-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((정원수-현원수)/정원수, 정원수 산정시 「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」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) 5%를 초과할 수 없으나,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

- 비정규직의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,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.

- 비정규직의 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·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,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-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「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상의 처우개선 소요액(급식비 월13만원, 복지포인트 연40만원, 명절상여금 연 80만원)을 편성한다.

○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.8%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. 다만, 2018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51.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.3% 이내, 46.4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.8% 이내, 41.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.3%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.

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(상생고용지원금)은 예비비로 편성하고,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

- '1인당 평균임금'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(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)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.

○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.4%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.

※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,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.4%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

○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,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.